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9. 12. 10.(화) 15:30~18:2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석대권(위원장), 강옥희, 김왕직, 남해경,
박선희, 유나경, 이향미, 정귀원, 홍형순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영주 괴현 고택 지정구역 조정	
2	영주 괴현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3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재심의)	
4	부안 동문안 당산 돌오리상 보존처리 및 복원	
5	제주 성읍마을 주변 하천(천미천) 정비사업	
6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마을정비사업(재심의)	
7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사랑채 보수정비	
8	청도 윤림 고택 주변 재실 신축(재심의)	
9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허가사항 변경	
10	경산 상옛집과 관련문서 내 테마공원 및 도로 조성	
11	남양주 궁집 주변 주유소 신축	
12	안동 도암 종택 주변 창고 신축(재심의)	
13	함안 무기연당 주변 농막 설치	
14	보성 이용우 고택 등 주변 산지 개간	
15	청도 윤림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16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역새 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17	울릉 나리 역새 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18	예천 남악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19	남양주 궁집 주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재심의)	

【보고사항】

19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	-----------------	--

심 의 사 항

1. 영주 괴헌고택 지정구역 조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문화재 지정 구역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진 경과

	문화재위원회 상정 및 처리내역
이건 위치, 배치계획 관련	○ 2012. 6차 민속분과 심의(영주 괴헌고택 이건대상지 선정) : 원안가결 ○ 2013. 3차 민속분과 심의(영주 괴헌고택 배치계획 검토) : 조건부가결 ↳ 경관, 구체적 배치계획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립 ○ 2015. 5차 민속분과 심의(영주 괴헌고택 배치계획 변경) : 조건부가결 ↳ 실시설계추진 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2016. 2차 민속분과 심의(영주 괴헌고택 배치계획 변경(월은정복원포함)) : 보류 ↳ 발굴조사 실시 후 재검토 ○ 2019. 4차 민속분과 심의(배치계획 변경/담장선형 변경,월은정 재현) : 조건부가결 ↳ 배치계획은 원안대로 하되, 지정구역은 괴헌고택 해체 전 담장선형으로 하며 월은정 재현은 허용기준 마련 이후 신청받아 처리 ○ 2019. 7차 민속분과 심의(괴헌고택 지정구역 조정) : 원안가결 ○ 지정구역 조정예고(문화재청 공고 제2019-284) : 2019.10.23~11.21. ↳ 접수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
- (3) 신청내용 : 영주 괴헌 고택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 조정내용

	당 초	조 정	비 고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번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81번지 외 4필지	
토지면적	2,030㎡	2,030㎡	
필지 수	5필지	1필지	

○ 조정사유

- 현재 이건(보수 중)에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을 보존관리하고 배치계획에 따라 승인된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 당 초 : 2,030㎡(1필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이산면 두월리	877	대	3,459	2,030	김중중외2	지정구역
합계	1필지		3,459	2,030		

○ 조 정 : 2,030㎡(5필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평은면 금광리	380	전	105	0.2	영주시	지정구역
	381	전	979	816.7	영주시	지정구역
	382	전	1,073	49.9	영주시	지정구역
	산76-3	임야	6,768	1126.1	영주시	지정구역
	1221-3	구거	93	37.1	국토교통부	지정구역
합계	5필지		9,018	2,030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19. 9. 3.)

- 괴헌고택 이건에 따른 문화재구역은 2019년 제4차 민속문화재분과(6.11.) 심의 시 검토된 당초 담장을 경계로 지정하도록 함이 좋겠음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현재 보수(이건) 중인 ‘영주 괴헌 고택’의 부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상 보존관리 근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문화재 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정구역을 조정함이 좋겠음
- 문화재청 공고에 따른 별도 의견 접수가 없고,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기 원안가결된 안을 승인하여 지정구역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2. 영주 괴헌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주변 건축 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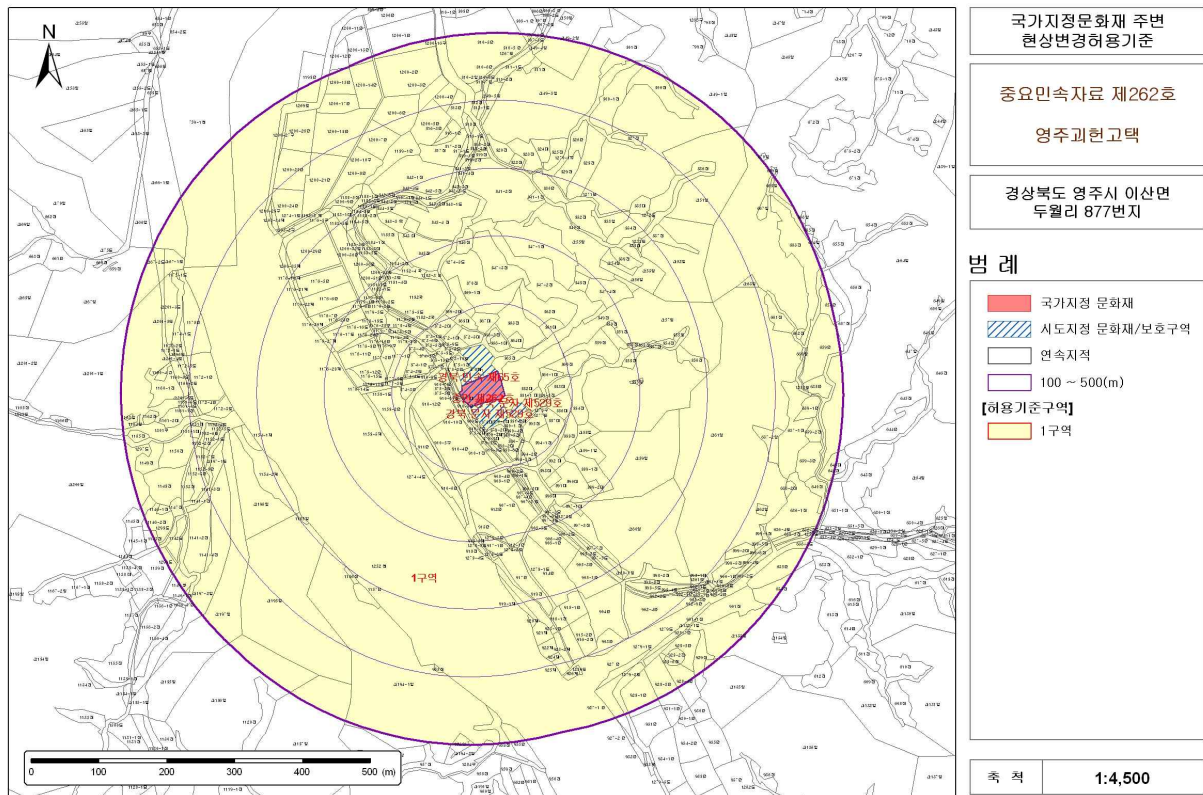
-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81번지 외 4필지
- (2) 조정내용
 -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평은면 금광리 일 대로 재조정
 - 문화재 이권단지 일대(시·도문화재 포함)를 1구역으로 지정
 - 기타 구역은 영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른 공통사항 중 문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물, 대기오염물질, 축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등 최소한의 내용 반영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10-129호 2010. 12. 24)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 동 허용기준안은 문화재 이권 시까지로 하고, 이권 후 허용기준(안)을 별도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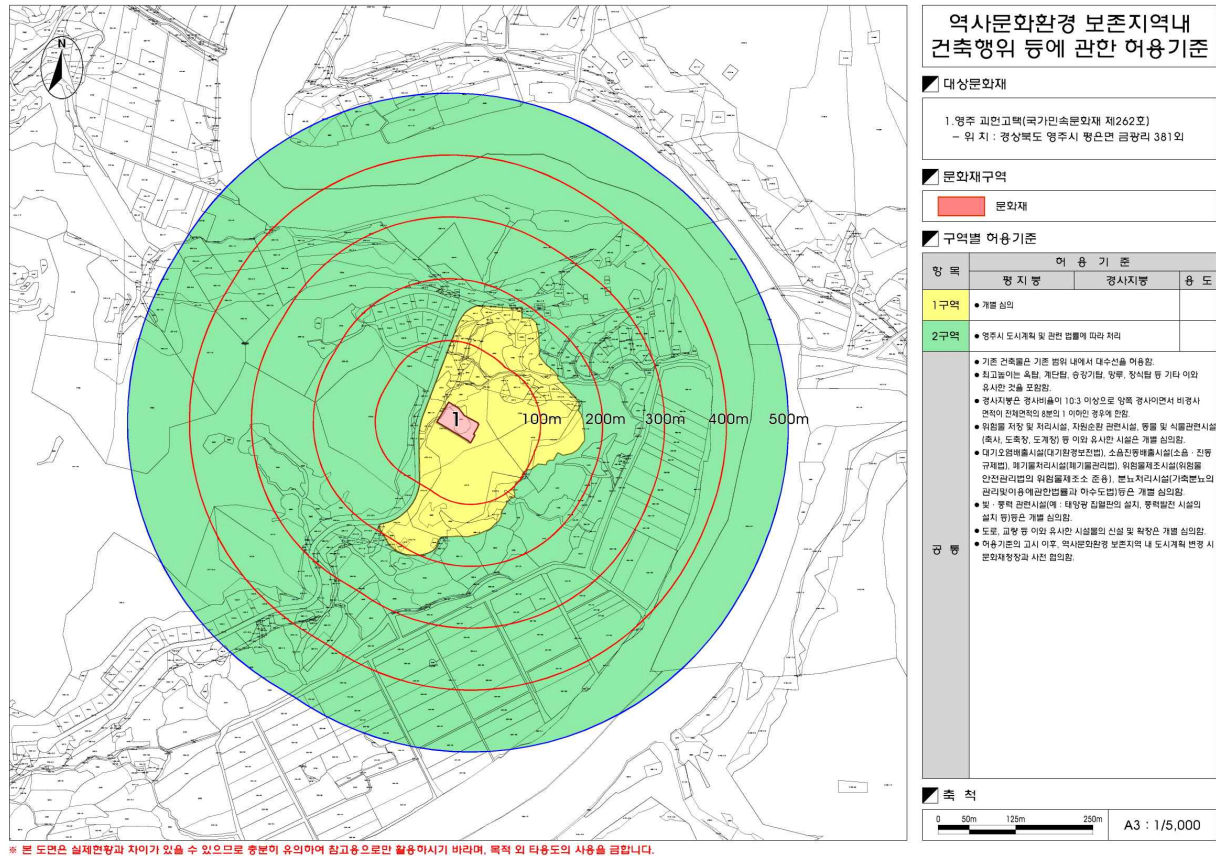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영주시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영주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은 개별 심의함 ○ 빛·풍력 관련시설(예:태양광집열판의 설치,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등) 등은 개별 심의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라. 주민의견 청취

- 의견수렴기간 : 2019. 10. 4.~10. 23.
- 의견청취결과 : 의견없음

다.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석대권, 문화재위원 정귀원, 문화재전문위원 남효대/2019. 9. 3.)

- 이견되는 괴현고택 보호를 위해 최소한도의 허용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문화재 보호를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계장 등) 등이 공통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3.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 복합건축물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에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건물은 제7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19.10.08) 검토 결과 불허된 건물 기존 39층(높이 118.85m)에서 29층(90.8m)으로 조정하고, 차폐식재계획을 추가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4구역(이격거리 20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4구역 : 고창군 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단,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주)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6, 282-4, 878-1
- (3) 신청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외
- (4) 신청내용 :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금회 신청내용	'19.10월 신청내용(부결)	비고
건축면적	1,429.30㎡	1,469.45㎡	2.7% 감소
연면적	23,377.20㎡	30,582.71㎡	23.6㎡ 감소
층수/높이	지하4층, 지상 29층 / 90.8m	지하5층, 지상 39층 / 118.85m	23.6% 감소

라. 검토의견(무형문화재과)

- 신축건물 높이를 118.85m에서 90.8m로 축소하고, 해당 문화재 주변에 높이 15m의 차폐식재를 조성하여 문화재로부터 해당 건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나,
- 대부분 5~10층, 최고층수가 17층에 불과한 주변 현황을 고려할 때 해당 신청건은 과도하게 높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39층 신축 신청 당시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2019. 9. 27.)

- 사업대상지가 해당 문화재의 정면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층수(높이)가 주변 건물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특히, 당산제를 지낼 때 시각적인 간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4. 부안 동문안 당산 돌오리상 보존처리 및 복원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솥대 상단의 돌오리상 복원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3년 분실된 솥대 상단의 돌오리상이 2019.02월 회수됨에 따라 회수된 돌오리상의 보존처리 및 복원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건물은 회수 직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지정보고서를 근거로 복원을 추진 중에 도난 전 사진 등을 근거로 복원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관계전문가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지정보고서와 달리 복원하기 위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안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87-4번지 외
- (3) 신청내용 : 해당 문화재(돌오리상) 보존처리 및 복원
 - 보존처리 : 별도의 보존처리실에서 세척 및 강화처리 실시
 - 복원방향 : 오리상의 흠이 있는 부분을 상부로 하여 복원

* 지정보고서(1969.12월 ○○○ 문화재위원) ※ 솥대 상부 요철은 훼손되어 요철 확인 불가
- "신간(神竿)의凸(볼록부분)와 돌오리(石鳥) 凹(오목부분)로 얹혀 있으며 접착을 위한 물질이 없다. 돌오리 머리는 서북향으로 향했다." ⇒ 동 기록을 근거로 반환식 당시 돌오리 방향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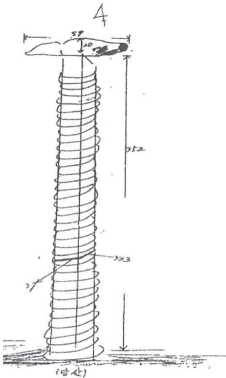
라. 관계전문가 의견(문화재위원 ○○○, 중앙대학교 교수 ○○○, 석장 보유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등/2019. 9.~10.)

- 1969년 12월 최길성 문화재위원 현지 조사보고서에는 신간의凸(볼록부분)와 돌오리(石鳥)凹(오목부분)로 얹혀 있으며 접착을 위한 물질이 없다고 기록했는데, 현재 신간 부분은 갈고 닦아 표면을 반들반들하게 만든 흔적이 확인되며 별도의凸(볼록부분)이 없는 상태임
- 돌오리상 방사선 촬영 결과, 돌오리상에 흠이 존재하며 흠이 있는 반대쪽에는 엑스레이 촬영결과 원석과 밀도차이가 있는 물질로 보수한 흔적이 확인됨
- 돌오리상의 목과 꼬리 연결 부위는 방사선 촬영 상 상·하로 연결된 균열이 발생되어 균열 발생 후 접합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나, 머리와 꼬리 부분은 별도의 파손 또는 가공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 돌오리상의 흠 주변부의 명암이 밝은 부분은 무언가 덮혀 있거나 대기로부터 별도로 보호되어 풍화도가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별도의 가공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흠은 기계로 시공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가공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
- 현지인의 구두 조사 및 과거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시뮬레이션 결과, 돌오리의 좌정 복원은 흠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고, 머리가 부안읍성의 주산 성황산을 바라보도록 즉, 서북향으로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흠이 있는 부분을 상부로 하여 복원할 시 기존 지정보고서 및 기록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차후 구체적인 정황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돌오리상은 복원 전 세적 및 강화제를 도포하는 정도의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흠 부분은 빗물고임 방지를 위한 조치 후 배치하도록 하며, 당산의 현 위치가 마을 자동차길과 인접해 있어 불시 파손 위험이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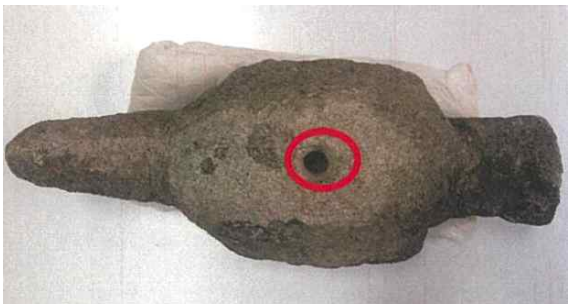
마. 검토의견(무형문화재과)

- 지정보고서(1969.12월)를 근거로 돌오리의 흠이 있는 곳을 배로 보고 설치할 경우 설치형태가 부자연스럽고, 도난 전 사진을 근거로 돌오리 흠이 있는 곳을 등으로 보고 설치할 경우 설치형태는 자연스러우나 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현 단계에서 돌오리상 복원 방향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추가 학술조사연구를 통해 돌오리 설치에 대한 심도깊은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사항(돌오리 복원 관련 쟁점사항)

		
민속자료조사보고서 19호 - 최길성 문화재위원(1969.12월)	1993년 당산제 당시 사진	2019년 반환식 당시 복원사진

* 지정보고서(1969.12월 ○○○ 문화재위원) ※ 솟대 상부 요철은 훼손되어 요철 확인 불가
- "신간(神竿)의凸(볼록부분)와 돌오리(石鳥) 凹(오목부분)로 얹혀 있으며 접착을 위한 물질이 없다. 돌오리 머리는 서북향으로 향했다." ⇒ 동 기록을 근거로 반환식 당시 돌오리 방향 결정

	
솟대 현황(훼손으로 요철 확인 불가)	돌오리상 현황(凹 요철 확인)
	
지정보고서에 따른 복원(안)	2003년 사진에 따른 복원(안)

사. 의결사항

- 보류
 - 추가 연구 후 재심의

5. 제주 성읍마을 주변 하천(천미천)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주변 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성읍마을 주변 하천(천미천) 정비사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0~500m), 4구역(이격거리 약 160~40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4) 신청내용 : 하천정비사업
 - 정비목적: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100년 빈도 홍수량 기준으로 재정비
 - 기 설치된 제방의 여유고 및 하천내 하폭이 협소하여 강우의 월류 및 제내지 배수불량 현상 등으로 농경지 및 도로, 가옥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본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농경지 및 주거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하천재해 예방에 기여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제방축조·보강, 호안설치(전석쌓기) : 연장 3,995m, 하폭확장 0~11m
 - 교량 및 연결도로 설치

하천명	교량명	기존 교량형식	연장(m)		폭원(m)		포장	비고
			기존	계획	기존	계획		
천미천 (본류)	성읍교	RC슬래브교	45	58	10	13	아스콘	재가설 (13m이설)
	신설교량2	하상도로	-	48	4.5	7	아스콘	신설
천미천 (구하도)	신설교량	하상도로	-	50	4~5	7	아스콘	신설

구 분	연결구간	포장	비고
지방도1119호선	성읍교 구간	아스콘	보조간선도로
성읍정의현로32번길	신설교량2, (구)신설교량 구간	아스콘	보조간선도로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11. 27.)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1·4구역 내 하천(천미천)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은 집중호우시 하천 제방 여유고 및 하폭의 부족으로 월류가 발생됨에 따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하천 바닥을 직접적으로 준설하지 않고, 기존 제방의 방식(전석쌓기)으로 축제 및 보축이 이루어지며, 일부 제방과 연결되는 부채도로와 신설 교량의 연장 길이가 길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해당문화재인 성읍마을에 미치는 경관상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양한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 등을 위해 문화재 위원회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교량, 석축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6.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마을정비사업(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마을정비 사업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마을정비사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지정구역에서 약 10m) 및 3, 4구역(지정구역에서 약 75~250m)으로 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본 건은 2019년 제7차 문화재위원회(10. 8.) 심의결과(보류)에 따라 사업내용 보완 후 재신청하였음.
 - 보류사유 : 관계전문가 자문 및 고증을 거쳐 설계보완 후 재심의
 - ※ 1구역 : 개별심의 /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 시설물 :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함양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538-6 외
 - (4) 신청내용 : 마을정비사업
 - 주차장 정비 : 잔디블록 포장(520*480*120, 555m²), 황토콘크리트 포장(장애인 주차장, 183m²), 돌담장 설치(H=1.2m, L=91.4m)
 - 인도교 설치 : 천연목재, L=36.7m, B=2.5m
 - 소공원 설치 : 조경 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1식
- ※ 보완사항 : 고택 진입로 정비(박석깔기) 및 고택 인근 전통담장 설치·포장사업 삭제, 인도교 난간 전통문양 추가, 소공원 내 토종야생화 추가 등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문화재위원 ○○○/2019. 11. 13.)

○ 주차장 정비

- 탐방객이 많이 증가하여 주차장 정비 필요, 담장 정비와 진디블록 정비는 양호, 화장실을 바로 옆으로 이전하여 개축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가 양호한 화장실을 활용하여 증축하는 방안 검토, 탐방객의 증가로 주차장 확장 필요, 마을 입구 등에 확보하는 방안 검토

○ 일두고택 진입로 정비

- 진입로 박석은 3년 전에 설치, 노인, 여성 하이힐, 장애인 통행 등에 지장, 현재의 안과 같이 넓은 박석 설치는 또 다른 위험(경관, 겨울에 미끄러짐, 깨짐 등), 적절한 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현재 상태 유지

○ 인도교 설치

- 하천의 자연환경과 마을의 역사경관 조화 추구, 천연 목재에 전통양식으로 설치

○ 소공원 설치

- 마을 안 토종 야생화 자원 풍부하며 마을의 경관을 자연스럽게 조성하므로 이들 야생화를 식재하여 공원 조성

○ 전통 담장 설치

- 집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과 경작지 경계 담장이 다르며, 설치구간의 담장은 밭을 경계로 한 담장으로 높이는 낮고 폭은 일반 담장보다 두꺼우며 상부는 둥근모양이므로 이러한 양식을 연장하여 설치, 기록이 없는 담장은 주변 이웃집 담장 양식 연장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7.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사랑채 보수정비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사랑채 보수정비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사랑채 보수정비가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아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 (4) 신청내용 : 사랑채 보수정비
 - 가설공사: 가설덧집 설치
 - 기단공사: 화강석 기단 해체 후 재설치, 기단 상부 생석회 다짐, 화강석 계단 해체 후 재설치
 - 목공사(교체): 기둥 1본, 대량 1본, 주심도리 3본, 주심도리장여 1본, 중도리 1본, 사례 1본, 연목 8본, 부연 16본, 초매기·이매기·연암 전체
 - 지붕공사: 전체 해체 후 재설치
 - 수장공사: 하인방 교체 16본, 문선 교체 17본, 문상인방 교체 1본, 문하인방 교체 4본, 창호 교체 13개소, 벽체·반침·마루 전체해체 후 재설치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10. 30.)

-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대통령 생가 사랑채를 보수정비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랑채의 축부, 지붕가구부, 창호 등에서 부재의 변형과 훼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보수정비의 범위 등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설계단계부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단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8. 청도 윤림 고택 주변 재실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주변 재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도 윤림 고택 주변 재실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113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신축불가)
- 동 안건은 5차례('15. 12월, '16. 2월, '17. 4월, '17. 8월, '18. 12월)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되었으나, 역사문화환경 저해의 사유로 부결되었고, 사업규모를 축소(-20.84㎡)하여 다시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2길 14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 ○ ○
- (4) 신청내용 : 재실 신축 97.20㎡
 - 그간 신청 경과

구 분	1차(2015.12월)		2차(2016.2월)		3차(2017.4월)		4차(2017.8월)	
	연면적/높이	구 조	연면적/높이	구 조	연면적/높이	구 조	연면적/높이	구 조
주1동 (한옥1동)	138.96㎡ /7.45m	목조, 한식기와,	60.48㎡ /6.9m	목조, 한식기와	137.52㎡ /8.45m	목조, 한식기와	137.52㎡ /7.0m	목조, 한식기와
기타	지하주차장 112.2㎡/2.3M 화장실 5㎡/2.3M		지하주차장 112.2㎡/2.3M 화장실 5㎡/2.3M				토석담장(높이 1.5m) 및 사주문(높이 3.78m)	

구 분	5차(2018.12월)		금회신청	
	연면적/높이	구 조	연면적/높이	구 조
주1동 (한옥1동)	118.04㎡ /7.0m	목조, 한식기와,	97.2㎡ /7.0m	목조, 한식기와
기타	토석담장(높이 1.5m) 및 사주문(높이 3.78m) 옹벽설치 6m 등		토석담장(높이 1.5m) 및 사주문(높이 3.78m) 옹벽설치 6m 등	

라. 관계전문가 의견

(1) 문화재위원 ○○○ / 2015. 11. 24.

-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에서 113m 이격된 낮은 임야지역(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신축불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것임
- 왜소화, 마루선, 일체성은 위치상으로 보아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지대가 높아서 원경상에서 조망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문화재전문위원 ○○○ / 2017. 3. 24.

- 청도 윤림 고택에서 북쪽으로 약113m 이격된 임야지역(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 신축불가)에 용도상 재실을 신축하려는 것임
- 1차 심의 부결 당시와 견주어 규모의 변화가 거의 없고, 오히려 2차 심의 당시 보다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최고 높이가 높게 계획됨
 - 계획 지반고를 2m 정도 낮추었다고 하지만 도면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님
 - 연면적 : 1차 138.96㎡ → 2차 60.48㎡ → 3차 137.52 ㎡
 - 최고높이 : 1차 7.45m → 2차 6.9m → 3차 8.45m
- 현재 대지에 약8.5m 높이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윤림고택에서의 후면 마루선이 변경되고 조망성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됨

(3) 문화재전문위원 ○○○ / 2017. 7. 31.

- 지난 2017년 4월 제2차 민속분과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 당시와 비교해 재실의 최고높이를 8.45m→7.0m로 다소 낮추었으나(이로 인해 임야의 절토량이 증가), 연면적의 변화가 없고 또한, 이번 계획안에 새롭게 포함된 담장과 사주문으로 인해 여전히 당해 문화재로부터의 조망성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므로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위원 ○○○ / 2018. 11. 26.

- 본 공사는 우백호 능선 중턱에 높이 7M, 연면적 118㎡의 한식목구조 건축공사와 옹벽설치(H:2.1M~4M, L=76M)와 상당부분 절토를 수반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문화재에서 직접적으로 조망이 되고 우백호 능선을 훼손하는 행위로 문화재위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건은 기존 신청안에서 재실 일부분의 면적만 감소하여 재신청한 건으로 당해문화재에서의 조망성과 상당부분 절토를 포함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적 경관의 영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9.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대구 둔산동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 「대구 백불암고택」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허가사항 변경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백불암고택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건은 2017년 4월 제2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원안접수된 사항으로 금회 변경사항이 있어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 「대구 백불암고택」
 - 소재지 : 대구 동구 옷골로 195-5, 일원(둔산동)
- (3) 신청위치 : 대구 동구 옷골마을 일원
- (4) 신청내용 : 관광자원화 사업(변경)

구분	'17.4월 (원안접수)	금회 변경신청	비고
사업 내용	가묘, 별묘, 보본당, 동계정 주변 마사토포장	가묘, 별묘, 보본당, 동계정, 연못 주변 마사토 포장	연못 주변 마사토 포장 66㎡ 증, 고택 주변 마사토 포장 417㎡ 감
	안길, 마을길 경화토포장	안길 마을길, 정자 진입로, 고택 주변, 마을 진입로 경화토 포장	정자 진입로, 고택 주변, 마을 진입로 경화토포장 730㎡ 증
	동계다리 석교 동계호안 돌쌓기 연못호안 돌쌓기 서계길 경화토포장/담장정비 회화나무터 우물정비 농산물간이집하장 옷골쉼터 마을다리 돌붙임 기존공원 내 커뮤니티 공간 (비보숲 외곽) 기타 전선지중화 등	좌동	

라. 현지조사 의견(전 문화재위원 ○○○/2019. 11. 1.)

- 백불암 고택 왼편 소방로를 기존 마사토포장에서 경화토포장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농사용 차량 출입 및 비상차량 확보를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변경함이 좋겠으나, 화단 등을 제외하고 구배를 조정하는 등 설계도서 보완이 필요하며, 전망대 주변의 목재데크는 안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경화토로 변경함이 좋겠음
- 본 사업내용 변경은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문화재 안전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완설계도서 등을 제출 받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0. 경산 상엿집과 관련문서 내 테마공원 및 도로 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과 관련문서」 내 테마공원 및 도로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산 상엿집과 관련문서 내 테마공원 및 도로 조성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 3구역에 해당되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본 건과 유사한 건으로 2014년 10월 제5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검토된 사항으로 부결된 건이 있음.
(경산 상엿집과 관련문서 내 상여체험시설 설치 : 부결(적정하지 않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경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과 관련문서」
 -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 144-30
- (3) 신청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일원
- (4) 신청내용 : 테마공원 및 도로 조성
 - 테마공원 조성 76,697m²
 - 숲전시관 건립(건축면적:893m², 연면적 1,786m², 2층)
 - 전시, 체험, 교육, 학술 등 프로그램 운용
 - 기반시설(7%), 조경시설(2%), 휴양시설(10%), 교양시설(21%), 편익시설(3%), 녹지 및 기타(56%)
 - 도로 조성 1,193m(B=7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2019. 11. 21.)

- 본 공원조성 계획안은 경산 상엿집을 중심으로 전통 상례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경산 상엿집 주변과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원조성 시 경산 상엿집 주변의 일정부분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은 본 문화재와 유관된 시설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원조성계획안에 문화재 지정구역은 제외하고, 절·성토는 최소화할 것

11. 남양주 궁집 주변 주유소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주변 주유소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궁집 주변 주유소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4구역(공통사항: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격거리 400m)에 해당되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5-5번지 일원
-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주)
- (4) 신청내용 : 주유소 신축
 - 대지면적 : 1,526㎡
 - 건축면적/연면적 : 203.18㎡/203.18㎡
 - 주유소 : 147㎡, 사무소 : 56.16㎡
 - 구조 : 일반철골구조(조립식판넬)
 - 높이 : 7.67m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신청부지에서 문화재쪽으로 인접한 평내동 588번지에 이미 기존 주유소가 운용중에 있으며 보호구역에서 이격거리가 400미터에 달하여 본 신청사항으로 인하여 역사문화환경에 가중되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2. 안동 도암 종택 주변 창고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1호 「안동 도암 종택」 주변 창고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동 도암 종택 주변 창고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126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동 안건은 지난 '19. 10월 제7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되었으나, 역사문화환경 저해의 사유로 부결되었고,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다시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1호 「안동 도암 종택」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33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 ○ ○(답)
- (4) 신청내용 : 창고 신축

구 분	'19.10월 (부결)	금회 신청	비 고
용 도	창고	창고	
대지면적	729㎡	729㎡	
건축면적	301.84㎡(164.64㎡+137.20㎡)	262.64㎡(125.44㎡+137.20㎡)	-39.2㎡
연면적	301.84㎡(164.64㎡+137.20㎡)	262.64㎡(125.44㎡+137.20㎡)	
구조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높이	7.8M	4.8M	-3.0m
층수	1층	1층	
마감	샌드위치판넬	샌드위치판넬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6. 19.)

- 국가민속문화재 제181호 안동 도암 종택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1구역 내(이격거리 약 126m(확인)) 농가용 저장 창고 2동을 신축하는 사항임
- 사업대상지와 해당문화재와의 사이에 축사, 비닐하우스 시설이 위치하고는 있지만, 이들 시설이 해당문화재와 근접(126m이격)해 있고, 또한 사업대상지가 해당문화재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 예정 창고의 면적과 높이 등을 감안할 때,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완충조경할 것

13. 함안 무기연당 주변 농막 설치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08호 「함안 무기연당」 주변 농막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안 무기연당 주변 농막(가설건축물)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 토지 약 40m, 농막 67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08호 「함안 무기연당」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1길 33
- (3) 신청위치 :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가리 ○○○(전)
- (4) 신청내용 : 농막 설치
 - 설치형태: 이동식 농막
 - 규격: 3m×6m, 바닥면적 18㎡, 높이 2.5m
 - 재료: 스틸
 -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2년(연장가능)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11. 22.)

- 국가민속문화재 제208호 함안 무기연당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1구역 내(이격거리 약 67m) 지상 1층의 이동식 농막 1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시설이 이동식 농막이기는 하나, 사업부지가 해당문화재와 근접해 있고 조망성 등에서 일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차폐 시설(수목 등) 등에 대해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수목 등 차폐식재
할 것

14. 보성 이용우 고택 등 주변 산지 개간

가. 제안사항

전남 보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63호 「보성 이용우 고택」 등 주변 산지 개간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성 이용우 고택, 이승래 고택 주변 산지 개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약 443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 :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58호 「보성 이승래 고택」, 제163호 「보성 이용우 고택」
 -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80-1 외
 - (3) 신청위치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산○○○(임)
 - (4) 신청내용 : 산지 개간
 - 개간용도 : 전(田) 조성(밭작물 재배)
 - 개간면적 : 지적면적 8,625㎡ 중 4,980㎡
 - 개간방법 : 원지형 개간 * 최대한 원지형 유지
 - 토지경사도 : 20.5도 ※ 개간허용경사도: 25도 이하
 - 수목현황
 - 입목수량 : 총 387본(편백 150, 굴참 25, 기타활엽수 188 등)
 - 입목도 : 50.26%
- ※ 산지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저촉사항 없음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11. 30.)

- 국가민속문화재 제163호 보성 이용우 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 (이격거리 약 443m) 임야 4,980㎡를 개간(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간사업 총면적 4,980㎡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에 편입된 면적은 1,400㎡이며, 나머지 면적은 보존구역에서 제외된 상태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 포함된 개간면적이 임야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문화재(마당)로부터의 조망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경사면 조정 등에 따른 절·성토로 인해 지형 변화도 예상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15. 청도 윤림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주변 건축 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 하는 것으로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2016. 4. 29. 문화재청훈령 제399호) 이전 고시된 허용기준을 개정 지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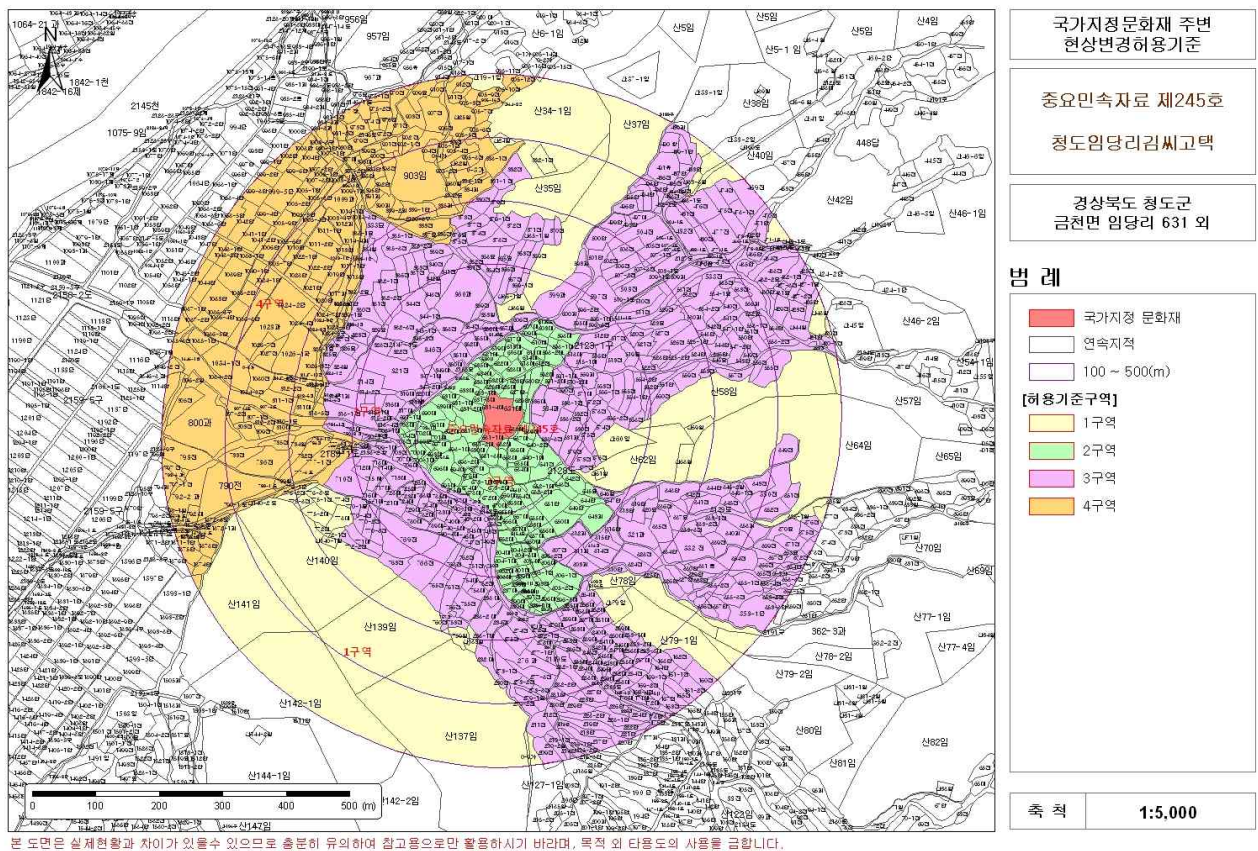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2길 14
- (2) 조정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용어 변경 및 공통사항 반영
 - 개별심의구역으로 변경, 층수기준 삭제
 - 공통사항 반영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08-16727호, 2008. 4. 10.)

구 분	허용 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30/100이상)
제1구역	○ 신축불가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주거시설	○ 건축물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주거시설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유물산포지 지역은 공사시행전 발굴조사 선행(2개소의 유물산포지와 1개소의 지석묘군)
 - 문화재주변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원지형 보존, 과도한 성·절토 금지
 -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시설은 건축제한
 - 소음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위험물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경사지붕은 합각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으로 제한하고 지붕재료는 기와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권장
 - 평슬라브 지붕은 한식기와의 처마돌림띠 설치



◆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구역 변경 없음

라. 주민의견 청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
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구역을 변경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의견 청취 생략

마. 참고사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
이전 고시된 허용기준을 지침에 따라 용어 변경 및 공통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향후 구역·기준 재조정 필요 시 별도 용역사업 등으로 추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16.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북 울릉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2016. 4. 29. 문화재청훈령 제399호) 이전 고시된 허용기준을 개정 지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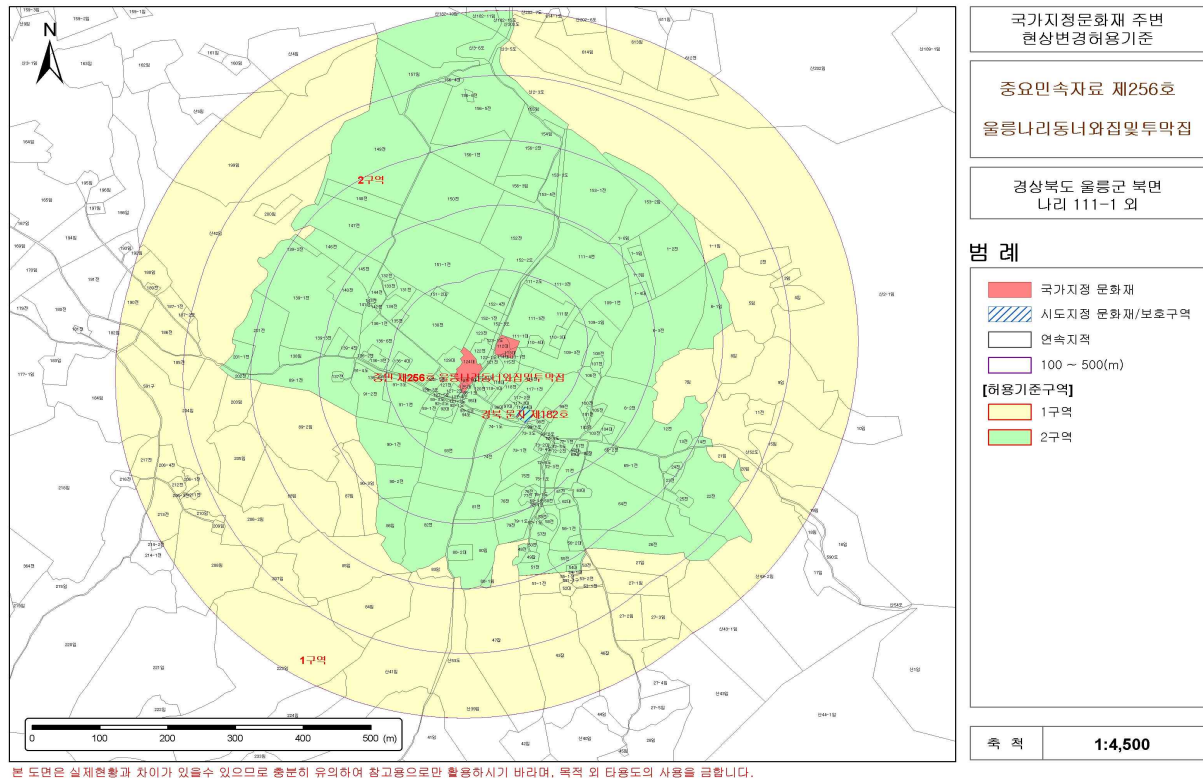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길 541
- (2) 조정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원지형 보존지역을 개별심의구역으로 변경, 층수 기준 삭제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09-113호, 2009. 12. 14.)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 신축 : 불가 ○ 기존 건축·시설물은 기존 규모 내 개·보수 허용	○ 신축 : 1층, 7.5m 이하 ○ 기존 건축·시설물은 기존 규모 내 개·보수 허용	농가형 주택 및 부속시설물
공통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1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



◆ 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신축 : 불가 ○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 신축 : 7.5m 이하 ○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농가형 주택 및 부속시설물
공통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허용기준 구역 변경 없음

라. 주민의견 청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
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구역을 변경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의견 청취 생략

마. 참고사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
이전 고시된 허용기준을 지침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는 것임. 향후 구역·
기준 재조정 필요 시 별도 용역사업 등으로 추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17.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북 울릉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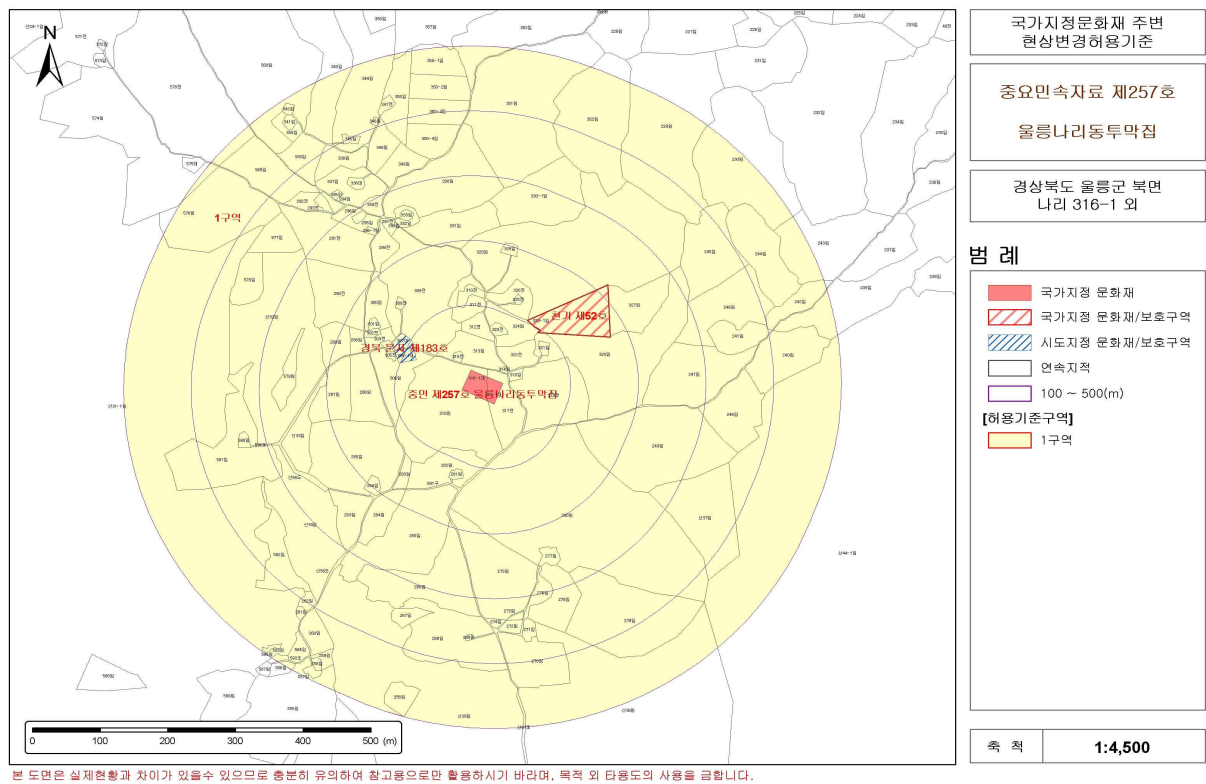
-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2016. 4. 29. 문화재청훈령 제399호) 이전 고시된 허용기준을 개정 지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1길 71-316
- (2) 조정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원지형 보존지역을 개별심의구역으로 변경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09-113호, 2009. 12. 14.)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공통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50c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 개별 심의		
공통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50c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허용기준 구역 변경 없음

라. 주민의견 청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구역을 변경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의견 청취 생략

마. 참고사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 이전 고시된 허용기준을 지침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는 것임. 향후 구역·기준 재조정 필요 시 별도 용역사업 등으로 추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18. 예천 남악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주변 건축 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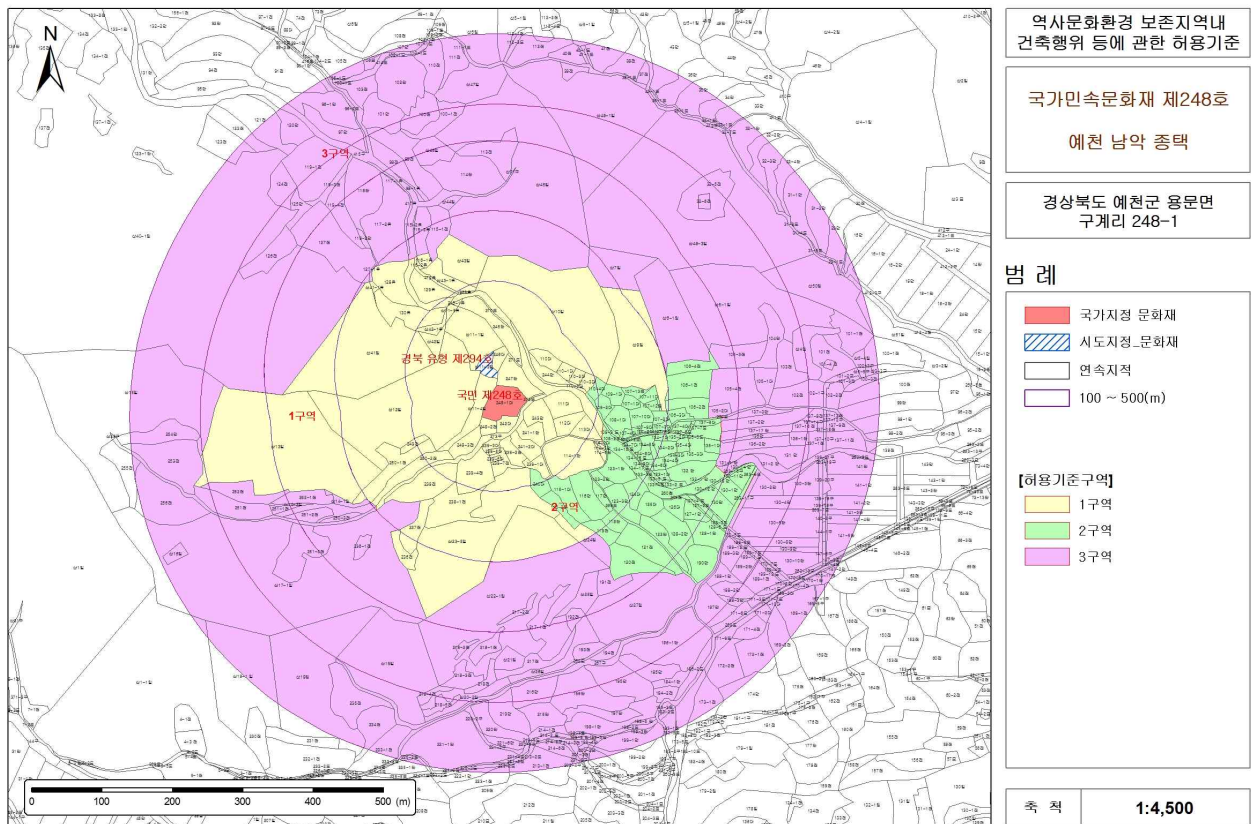
-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2017년 조정고시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추가 반영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8-1
- (2) 조정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공통사항에 반영
- (3) 조정내용
 -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17-111호 2017. 9. 11)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개별 심의	○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개별 심의	○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구역 변경 없음

라. 주민의견 청취

- 의견수렴기간 : 2019. 10. 10.~10. 31.
- 의견청취결과 : 의견없음

마. 참고사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공통사항에 반영하는 것임. 향후 구역·기준 재조정 필요 시 별도 용역사업 등으로 추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20. 남양주 궁집 주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주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궁집 주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76m)에 해당되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본 건은 2019년 제8차 문화재위원회(11. 12.) 심의결과 부결된 사안으로, 건축물 형태, 높이, 연면적 등을 조정하여 재신청하였음
 - 부결사유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5-5번지 일원
-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외
- (4) 신청내용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대지면적 : 6,133.4㎡
 - 건축면적 : (당초) 2,142㎡ → (변경) 2,078.63㎡(63.37㎡ 감소)
 - 연면적 : (당초) 4,041.48㎡ → (변경) 3,769.5㎡(271.98㎡ 감소)
 - 높이 : (당초) 11m → (변경) 9.7m(1.3m 감소)
 - 구조 : 일반철골조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11. 4.)

- 신축 예정인 건물은 1층에 마트, 2층에 음식점이 들어서 예정으로 동서방향으로 길이 78M, 높이11M의 다소 과한 규모로 설계되었고, 마트가 요구하는 천장고 등을 고려하여 평지붕으로 계획됨

- 외관은 창고형 마트형태로 마감재 또한 패넬로 예정되어 있음
- 배치는 대지 북측에 건물이 입지하고 전면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93대 규모의 외부주차장이 대지경계선을 따라 구획되었으며, 수목 식재 및 조경 계획은 전무함
- 비록 신청 건물이 궁집과 경춘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언덕에 가려 해당 문화재에서 직접적인 조망이 되지 않으나 보호구역 경계에서 조망이 되는 점 등을 고려 건물의 규모 및 형태, 조경계획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차폐식재할 것

보 고 사 항

19.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내 농로 포장 등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제주 성읍마을 (국민 제188호)	제주 서귀포 시 표선면 (표선면장)	□ 제주 성읍마을 내 농로 포장 ○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07-1 일원(지정구역) ○ 이격거리: 정의현성에서 약 480m ○ 사업내용: - L=168.2m, B=3m, A=505m ² - 콘크리트 포장	○ 허가 - 기존 농로를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제주 성읍마을 (국민 제188호)	제주 서귀포 시 표선면 (○○○)	□ 제주 성읍마을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4구역(평슬라브 신축 불가, 경사지붕 12m이하) ○ 이격거리 : 290m ○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 증축 - 증축용도 : 창고 - 대지면적 : 815m ² - 연면적 : 251.48m ² (기준)+ 73.25m ² (증축)=324.73m ² - 층수/높이 : 지상 1층, 5.1m - 구조 : (기준)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블록조, 벽돌조 (증축) 경량철골조	○ 허가 - 2018. 8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경제사정 등으로 허가기간(2018.8.9. ~ 10.31.) 내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되어 재신청한 것이므로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